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2025.12.현행화)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8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전 부서	민원·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업무	민원인(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전 부서	입찰계약에 관한 업무	입찰종료 이전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5호 7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안서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입찰종료 이전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5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5호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7호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있음
기획조정팀	일반 기획 총괄	확정 전 연도별 업무계획	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기획조정팀	이사회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회의록 내 발연자 성명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 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획조정팀	예산편성, 배정, 전용, 통제, 조정 및 한강수계기금 관리 업무	내부검토 및 심의과정 중에 있는 확정 전 예산 정보	5호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획조정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채용 후보자 인적서류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기획조정팀	공단 홍보에 관한 업무	언론사 담당자의 개인정보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경영혁신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경영평가 정보	5호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혁신팀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서울시 핵심가평가 수행 정보	5호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혁신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운영성과평가 및 운영관리 실태평가에 관한 업무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운영성과평가, 실태평가 정보	5호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혁신팀	임원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업무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임원성과계약 및 평가 정보	5호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혁신팀	평가 관련 성과급 운용에 관한 업무	직원 평가급 평가 점수 및 등급	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경영혁신팀	물재생체험관, 물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물재생체험관을 이용한 시민 개인정보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경영혁신팀	제도개선업무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제안제목과 채택여부를 제외한 제안내용 사항(제안자 요청 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국민제안규정 제7조)
총무인사팀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중장기인력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정보	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5호	위원 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공정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5호	회의록 내 성명과 내용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징계, 표창)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 의결내용	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확정 전 표창 예정자 명단 및 자료	5호	확정 전 공개 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인사이력관리)	인사기록카드	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근무평정, 승진)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승진후보자 명단	5호	확정 전 공개 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총무인사팀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시험위원 정보	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시험 문제지, 채점표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총무인사팀	보안(을지연습, 총무계획, 민방위 등)에 관한 업무	을지훈련 사건 실시계획,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2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기관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방위 조직구성, 교육훈련, 대피시설 구조도	2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기관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	2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기관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비밀취급인가자 목록	2호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기관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총무인사팀	본부 청사관리에 관한 업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정보	3호	공단 내 시설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
총무인사팀	임직원 임금·제수당·자체평가급 운용에 관한 업무	급여 및 수당내역,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납세내역 중 개인정보, 개인별 급여채권(압류,공탁 등)내역,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개인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내역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총무인사팀	임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총무인사팀	인권경영 및 직원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고충 관련 상담 및 조사 정보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상담 및 조사 정보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인권침해 신고 관련 상담 및 조사정보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총무인사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총무인사팀	공단 법무관련 업무	법률자문 질의서 및 의견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소송 대응방침, 입증자료, 준비서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총무인사팀	민원·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업무	민원인(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총무인사팀	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휴직 사유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팀	재무회계 및 결산·세무·원가 관련 업무에 관한 업무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결산 관련 정보	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무팀	입찰계약에 관한 업무	입찰종료 이전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안서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입찰종료 이전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5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5호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7호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음
재무팀	계약심의회와 관련한 업무	계약심의회사유서 등 관련서류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7호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음
재무팀	예산집행(지출) 관련 업무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재무팀	현금·예금·유가증권 출납, 보관 및 금고관리	예금거래내역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시스템 로그 파일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세부구성도 현황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 업무	전산실 운영 관련 시스템, 장비 내역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시스템 IP 내역, IP관리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IP관리정보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시스템 구조 관련 사항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내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보호·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업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결과 등 관련 산출물	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기술전략팀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관한 업무	사업전략, 사업 계획 및 경제성 분석 자료	5호	입찰 계약, 사업의 기획, 검토 과정에서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신규사업 타당성 및 특정사업 원가분석 자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술전략팀	서울시 노후기전 5개년 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중장기 노후기전 대책 기본계획 및 최적화 계획 수립 자료	5호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입찰 계약 등)
기술전략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점검, 진단 등에 관한 자료	5호	검사·시험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음
사업추진팀	설비혁신, 개선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업무	투자사업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한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사업추진현황 관리 자료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안전관리팀	중대 산업·시민재해 등 예방 안전계획 수립·이행·관리	안전 관련 자재 및 시설의 세부정보	3호	공개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전관리팀	산업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공정안전 관리	공정안전관리(PSM) 매뉴얼	3호	공단 내 시설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
안전관리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5호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안전 중 근로자 개인신상정보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회의록	5호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전관리팀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근거)
운영총괄팀	물재생시설 공정·운영 매뉴얼 정비 총괄 및 이행상태 점검 업무	유지관리지침서(운영 매뉴얼)	3호	공단 내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거나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체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노출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정별 운영 데이터 관련 자료	3호	데이터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이 생겨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설비 규격 및 기술 정보 관련 자료	3호	공단 내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운영총괄팀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업무	재난대응 매뉴얼	3호	공단 내 시설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
운영총괄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업무	신재생에너지사업(비태양광) 관련 비밀 정보	5호	사업의 기획, 검토 과정에서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업개발 및 인수 관련 자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술지원팀	센터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 취급) 관련 업무	폭발물·인화성 물질·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물재생연구소	물재생센터 현안과제 연구 및 기술개발	현안관련 조사·연구 중인 자료	5호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구제안서	5호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발 진행중인 연구자료	5호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유 원천기술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체연구개발 핵심기술자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식재산권 제안 요청 관련 자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출원 심사청구서 심의자료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발명진흥법 제19조)		
물재생연구소	워터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업무	워터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석 관련 시민 개인정보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물재생연구소	국·내외 환경 관련 전문기관과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	협약서 내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하는 정보	7호	협력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물재생연구소	하수관로 원격감시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및 감시시스템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물재생연구소	서울시 물산업 육성 사업 지원	서울시 물산업 육성 관련 핵심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7호	참여업체 신기술에 대한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물재생연구소	국·내외 환경 관련 전문기관과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 선정위원회 및 검토자 명단,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	5호	선정위원회, 검토자 명단 및 현장평가 세부 결과 공개 시 협력업체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7호	협력업체 신기술에 대한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물재생연구소	공단 및 서울시 요청기술 검토 및 상시 자문 지원	자문자명, 자문 질의서, 전문가 자문 의견서	5호	자문위원회에 대한 명단, 질의서 및 의견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7호	자문 의견서 내 기술의 핵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해당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수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감사실	공단 감사·감찰 계획 수립·이행	진행중인 감사 정책결정 사항	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불시감사계획, 불시지도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질문서, 문답서, 확인서, 경위서	5호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 시 진술 청취 및 문서 제출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현황	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6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면책 관련 문서, 재심의 관련 문서	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감사실	청렴시책,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 업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지에 대한 답변 결과 및 전문가 자료	7호	공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 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7호	공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감사실	외부기관 감사에 관한 업무	외부감사결과(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외부감사결과 공개 가능), 감사자문옴부즈만회의 결과, 모니터링 결과, 복무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호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6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감사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관리 및 비위 자료에 관한 사항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관련 신고센터 신고자의 개인정보	6호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6호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병역업무 포함)에 관한 업무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비공개세부기준(물재생센터)

(2025.12.현행화)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8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전 부서	민원·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업무	민원인(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있음
전 부서	입찰계약에 관한 업무	입찰종료 이전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 내역 사양서, 제안서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
		입찰종료 이전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5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5호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7호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센터 공통	약품공급시설 운영.개선, 유지관리, 약품량관리 업무	화학약품·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보관 위치 정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공통	센터 내 유해화학물질	폭발물·인화성 물질·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공통	소관 시설물 공정·운영 및 시설개선, 유지관리 업무	센터 내 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각종 지도(관로도 등) 및 구조물 도면 (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공통	소관 시설물 공정·운영 및 시설개선, 유지관리 업무	센터 내 지하 시설물 정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공통	재이용수 관련 생산 설비 유지관리	재이용수 공급관로 관련 각종 관로도 및 도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운영관리팀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방방호시설 현황 및 도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운영관리팀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주민협의회 참여 개인의 개인정보	6호	이름, 소속 기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센터 운영관리팀	사택관리에 관한 업무	사택 입주자, 퇴거자 명단	6호	입주자의 주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택 입주자 주소(동호수)	6호	입주자의 주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센터 운영관리팀	정·후문 통제에 관한 업무	입주자, 출하자, 구매자 등의 차량정보(소유자, 주차·출입 정보 등)	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센터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센터 운영관리팀	폐수배출시설 확정 배출량 산정업무	수처리 및 폐수처리 시설, 환경시설 등 위치 정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운영관리팀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등) 운영에 관한 업무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공원, 녹지, 에코센터 등) 관련 도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공정제어팀	감시·제어시스템(CCTV 포함)설비 구축·개선·유지관리 업무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 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영상정보	6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 침해를 줄 수 있음
		각종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운영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 시 해킹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음	2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센터 공정제어팀	주변전실 관련 전기설비 운영 및 개선·유지관리	전기 도면(전기회로도, 준공도면, 정비지침서)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공정제어팀	통신설비 구매·개선·유지관리	통신설비 개통도 등 도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센터 시설관리팀	주민편의시설(공원·녹지 등) 운영에 관한 업무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공원, 녹지, 에코센터 등) 관련 도면	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